

退溪 李 滉의 時政論考

文理科大學 助教授 韓 榮 國

目 次

- | | |
|----------------------|----------|
| 序言 | 3. 內政論 |
| 1. 16世紀 朝鮮社会和 士林의 位置 | 4. 對外政策論 |
| 2. 資料와 行蹟 | 結語 |

序 言

退溪 李滉에 대한 理解는 지금까지 주로 그의 哲學的인 業績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왔다. 그가 平生을 거의 性理學에만 盡力하였고, 또 이에 위대한 業績을 남겼다는 점에서 극히 온당한 경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朝鮮王朝에서의 대개의 學者가 그러했듯이, 李滉도 당대의 官人이었고, 또 士林을 이끈 代表的인 知性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官人으로써, 또 知性으로써의 그의 活動 및 意識이 抽出·理解되지 않는 限 그에 대한 온전한 理解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本稿는 이러한 意圖下에서 그 焦點을 그의 時政論에 맞추어 본 것이다. 그의 時政論의 分析·考察을 통하여, 그가 지녔던 時代意識과 이에 바탕하였을 經世觀을 살피고, 아울러 그와 活動을 같이 하였던 당시 士林의 政治의 主張도 들어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哲學도 現實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學問임으로, 이러한 考究作業은 그나 그와 活動을 같이 한 士林의 哲學體系를 理解하는 데도 一助가 되리라고 믿는다. 江湖 諸賢의 批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追記：本稿 作成도중에 朴鍾鴻박사의 「退溪의 時代的 背景」(退溪先生四百周忌紀念事業會 編 退溪學研究, 1972, 서울대학교 출판부)를 접하게 되었다. 拙稿가 이 玉稿의 論旨를 어지럽히거나 앓을가 저어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約束된 것이어서 부득이 執筆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朴鍾鴻박사의 上記 玉稿를 參考하기 바란다.

1. 16世紀 朝鮮社会和 士林의 位置

朝鮮王朝는 그 建國으로부터 經國大典의 頒布(1471)에 이르기까지 近 1世紀에 걸쳐서 中央集權의 統治體制를 확립하였다. 15世紀 末葉에 이르러서야 中央集權을 指向한

王權에 부응하는 勳旧·威臣의 勢力이 政界를 完全 掌握하는 權貴層의 固定化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中央集權體制의 확립·안정에는 또다른 側面에서의 朝鮮社會의 動搖가 겹쳐지기도 하였다. 執權層의 權貴化에 대한 牽制勢力의 缺如에서 빚어진 必然的인 現象의 일단이었다고 보겠는 바, 職田制의 廢止, 大土地所有로의 土地兼併과 併作半収의 收奪慣行의 盛行, 代役納布 및 放軍收布의 展開등등이 그러한 現象들이었다. 이들 現象은 서로가 表裏를 이루는 가운데 官紀의 紊亂, 田制 및 軍制의 破綻, 農民의 離田·流亡등과 같은 樣相을 빚어내면서, 傾國의 要因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道學的 性理學으로 素養을 쌓은 이른바 士林의 中央政界에의 登場은 바로 이러한 傾國의 樣相들의 批判을 통한 勳威勢力에 대한 牽制勢力의 形成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커다란 歷史的 意義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들——当初에는 주로 嶺南士流였다——의 血統의 精神的 傳統이 애당초 朝鮮朝의 建國勢力과 相反되었던 데서 그러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이 대체로 中小地土層이었던 데서도 大地主化하는 勳威勢力과 現實的으로 對立할 素地를 지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精神的 經濟的 基盤에서 형성된 이들의 自治的 性向이 中央集權을 強化하려는 勳威勢力과 政治的 相衡을免키 어려운 바탕을 지니고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金宗直의 登用에서 비롯된 士林勢力의 中央政界로의 進出은 곧 勳威勢力과의 격심한 충돌을 빚어 갔다. 金宗直을 비롯한 士林一派는 먼저 그들의 基盤을 확고히 하기 위한 留鄕所의 復立運動을 벌였다. 留鄕所 組織을 통한 儒敎的 鄕村秩序의 再編企圖로 여겨지는 作業이었다. 그러나 그 結果는 勳威勢力의 勝利로 이끌어졌다. 留鄕所가 官權에 의하여 掌握되는 양태로 끝맺어짐으로써, 士林一派의 본래의 企圖가 挫折되고 말았던 것이다.^① 여기서, 그들은 治者의 道德的 良心과 清白의 生活을 강조하는 理論의 전개를 통하여 對勳威鬭爭을 벌여 갔다. 하지만, 이 鬭爭 역시 戊午士禍(1498)와 甲子士禍(1504)라는 政界에서의 士林除去作業을 통하여 敗退하고 말았다.

勳威勢力에 대한 牽制勢力으로써의 士林의 첫번째 登場은 이로써 一段의 終止符가 찍혀졌다. 그러나, 士林의 勢力은 在野에서나마 날로 擴大되어 갔다. 嶺南 一域을 벗어나 畿湖地方으로까지 그 勢力이 波及되어 간 것이다. 1515년(中宗 10年)으로부터 政界에 다시금 진출하기 시작한 趙光祖一派에 畿湖出身이 적지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바로 이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趙光祖의 登用에서 형성된 두번째의 士林政治勢力은 成宗朝에 비하여 그 기반이 보다 강성한 것이었다. 까닭에, 그들의 政治鬭爭도 보다 強烈하였다. 反勳威의 性

(1) 李泰嶽 「士林派의 留鄕所復立運動」(震懷學報 34, 1972).

格이 露骨化되어졌고, 그 手段도 急進의이고 革新的인 것으로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그들의 鬭爭은 金宗直一派의 留鄕所復立運動과 그 性格을 같이하는 呂氏鄕約의 普及運動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하지만, 그 窮極의 目標은 그들이 盡力하여 마지막은 國王의 哲人君主의 改造作業에 연결되는 것이었다. 國王에 대한 黜威勢力의 影響을 根本적으로 排除하려는 企圖의 하나로 理解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企圖 역시 相衡關係를 이루었던 黜威勢力의 得勢를 끝내 挫折시키지를 못하였다. 오히려, 己卯土禍(1519)라는 값비싼 代價를 치루고 敗退하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抬頭되었던 士林의 政治勢力은 이와같이 그것이 黜威勢力에 대한 唯一한 牽制乃至는 反對勢力이었던 데서 모두 黜威一派에 의하여 政界로부터 도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結果 더욱 강성하여진 黜威勢力은 宣祖의 登位(1568)에 이르기까지 계속 執權하면서, 그들 나름의 政爭을 벌여갔다.

그렇다고, 이 동안에 士林의 政界 進出이 全無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執權勢力이 바뀔 때마다 표방되었던 새로운 氣風의 振作이라는 虛飾이 士林의 간간한 登用을 일구어 주었다. 金安老의 失脚(1537)이 마련한 계기를 타고 己卯土禍에 축출되었던 金安國·李彦迪 등이 登用(1540)된 것도 그 하나의 例였다. 하지만, 이 時期에 登用된 일부 士林도 그 대부분은 黜威間의 政爭에 휘말리어 희생이 강요—乙巳土禍(1545) 및 丁未土禍(1546)—이 되기가 일수였다.

이리하여, 16세기의 朝鮮社會는 傾國의 要因을 胚胎한 채로 걸잡을 수 없는 變質의 도가니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黜威의 獨擅을 牽制할 수 있었던 唯一한 勢力인 士林의 意氣는 低下되고, 곧 읽는 소리가 槓根을 부르는 소리로 여겨지는 암담한 社會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 時期의 士林이 政治·社會에의 直接的인 參與·俸仕에 보다는 學問의 研究에만 沒入하게 된 것도 이렷기 때문이었으니, 性理學의 一大 濶期가 이 시기에 마련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뒷날, 柳壽垣은 이 시기의 士林의 政治參與를 아쉬워하며 다음과 같이 回顧하고 있는 것이다.

嗚呼，以此而望傲國家之實政 難矣，禮服詩律文詞 固無足增損於治道 至於學問 固出治之本也，但我東學者 實無真得 類多虛名，如退溪學問 若試於政事 豈無其效 而時無可為 終身退藏 謂之淑世善俗 以惠後學 則可矣，其於國家實政 未嘗得力，靜菴固可有為 而一時諸賢 多不識時義 決無做事之理，然則我朝未得儒者之效矣。(「迂書」卷一 論備局)

2. 資料와 行蹟

李滉은 위와 같은 16세기 朝鮮社會에 태어나서 (1501 : 燕山 7年), 그 속에서 成長 하고

仕宦하다가 세상을 떠난(1570 : 宣祖 3年) 대표적인 知性的인 한 사람 그것도 政治的으로 가장 被禍가 컸던 嶺南士林의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서 그 어떤 意欲의인, 革新的인 時政·改革論을 期待하여 봄직도 한 것이다. 그런데, 現在까지 알려진 그의 遺著나 行蹟에서는 不行하게도 이러한 期待를 거의 걸어 볼 수가 없고 있다. 겨우, 1568년(宣祖 1年)에 製進한 時務六條와 經筵割啓를 비롯한 斷片的인 記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불과하고 있는 것이다.②

李滉은 16세기의 亂世속에서도 비교적 오래고도 순탄한 仕宦生活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찍이 進士試(1527~28)를 거쳐 大科에 及第(1534)한 以後, 간간히 辭職·下鄉하는 일이 있기는 했어도, 近 40년 동안을 줄곧 仕宦한 것이다. 그리고, 그 官職도 3司(弘文館·司憲府·司諫院)와 成均·芸文館系를 거쳐, 工曹·禮曹判書(1566~67)와 右贊成 및 大提學에 이르르고 있다. 또, 外職으로는 丹陽 및 豊基郡守(1548)를 지내고 있고, 陪行御史(1542)와 迎接都監 郎厅(1545)으로 差出된 바도 있다.③ 그런데도, 그에게서 두드러진 政治活動이나 時政·時弊論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어떠한 까닭에서일까?

或者는 李滉이 애당초 政治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學問에만 投入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그의 登科時的 年令이나 그 뒤의 仕宦經歷으로 보면, 한마디로 그가 政治에 無心했었다고만은 斷定할 수가 없으리라 본다. 그가 정녕 政治에 無心했다면, 뒷날 간간히 名分을 들어 仕宦에의 進退를 가렸던 그가 뒤늦게(34才) 登科하여 金安老의 獨擅下임에도 入仕한 까닭을 찾을 수가 없고, 또 40년 동안을 勳威執權下에서도 줄곧 政界에 몸을 담았던 이유도 삼릴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學問에 못지 않게 政治에도 至大한 關心을 지녔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고 본다. 다만, 그것이 그 어떤 이유에서 表面化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겠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李滉은 일찍이 趙光祖를 다음과 같이 評한 바 있다. 즉,

天姿信美 而學力未充 其所施爲 未免過當如故 終至於敗事 若學力既充 德器成就然後 出而担当世務 則其所就 未易量也……堯舜君民 雖君子之志 豈有不度時·不量力 而可爲者哉.④

라고 한 것이니, 經世家는 担務에 앞서 반드시 學·德을 충족히 쌓아야 하고, 担務(施政)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時勢와 力量을 헤아려서 행하여야 한다는 思考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思考는, 틀어켜 보면, 政界에 임하는 그의 信念이기도 하였겠다. 그

(2) 退溪先生文集 卷之六의 「甲辰乞勿絕使使疏」 및 「戊辰六條疏」와, 卷之七의 「戊辰經筵割啓一」 그리고 卷之九~四十의 書들에 보이는 몇가지가 그 대개다. 本稿 3 參照.

(3) 退溪年譜 參照.

(4) 張志淵「朝鮮儒教淵源」

는 자신을 포함한 士林들이 世務의 扣當에 傾注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研學・修德에 더욱 邁進하여야 할 필요를 痛感하고 있었고, 또 急進의 이고도 強劫의인 改革・鬪爭에 보다는 漸進의 이고도 自發의인 時宜에 따른 改革・改善에 노력하고 기대하여야 할 것을 切感하고 있었던 것으로 理解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信念은 그의 出生과 修學에서 연유되었으리라 여겨진다

李滉은 安東의 進士 李植의 막내로 태어나, 그의 叔父 李滉에게서 修學하였다. 嶺南 士林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修學하였던 데서 그는 道學風의 性理學을 일찍부터 익힐 수가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하였던 데서 知性으로써의 그의 苦悶은 한층 더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學問과 時義에 理解가 깊어감에 따라, 戊子・甲午年의 士禍며 己卯年의 被禍가 더욱 그의 腦裡를 압박하였으리라 믿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學問과 政治의 合一點을 터득하고, 君・民의 철저한 教化를 통한 底辺勢力의 擴大에 기반하는 根本的의 이고도 自生的인 社會改革에 邁進하고 期待하는 信念과 態度를 지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態度는 그 뿐만 아니라, 數次의 被禍를 입은 당시 士林의 공통된 것이 아니었나 여겨지니, 이 무렵의 士林의 動向, 즉 勳戚의 獨擅下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政界로 進出하여 具體的인 制度의 改革에 보다는 儒家의 王道政治의 理論을 說破하는 한편, 書院의 設立과 鄉約의 普及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推斷하건대, 이러하였던 당시 士林의 態度와 李滉의 信念이 그로 하여금 金安老의 獨擅속에서도 人仕하기를 주지치 않게 하였고, 또 그로 하여금 조용히 仕宦・說論하면서 스스로의 學問과 經倫을 키워가게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의 가장 위대한 學的 業績으로 지적되는 四端七情說이 바로 올바른 行爲, 善한 行爲가 누구에게나 可能함을 立證하는 哲學的 表現이었다는 것도 한갓 우연한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데, 李滉이 1568년에 올린 時務六條疏는 그 내용이 1541년(中宗36年) 4월에 그가 弘文館 校理로써 副提學 李彦迪 등 11名의 館員들과 함께 上疏한 時務十條疏⁵⁾와 거의 同一하고 있다. 後者가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 勳戚政治의 失政을 攻駁하는 論旨를 아울러고 있는데 대하여, 前者는 그 條目을 含縮하여 原理・原則論만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本稿3 參照). 이러한 양상은 그의 主張・時局觀이 그만의 것이 아니라, 앞서도 言及하였듯이, 己卯士禍 이후의 士林 全般의 공통된 것이었으리라는 점을 뒷바쳐 주고 있는 동시에, 그들이 執權한 宣祖初에도 그들의 志向 및 時局觀이 그대로 繼續되고 深化되어 있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이제, 위와 같은 理解를 지니고서 李滉의 時局觀과 志向點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5) 中宗實錄 卷95 中宗36年4月戊午條 本稿 3 參照

있는 中宗朝의 時務十條疏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時政論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를 포함한 당시 性理學派의 大體의인 時政論이 되기도 하리라 본다

3. 內政論

中宗36년에 李滉이 弘文館員들과 함께 上疏한 時務十條疏는 1綱 9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致中和」(1綱)와 「宮禁不可不嚴」「紀綱不可不正」「人材不可不辨」「祭祀不可不謹」「民隱不可不恤」「教化不可不明」「刑獄不可不慎」「奢侈不可不禁」「謙靜不可不納」등이 그것들인 바, 이들은 모두가 勳戚政治의 失態의 批判과 아울러 賢哲君主에 의한 王道政治의 확립을 위한 君王의 覺醒을 促求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民隱不可不恤」「教化不可不明」「刑獄不可不慎」「奢靜不可不納」등이 그것들인 바, 이들은 모두가 勳戚政治의 失態의 批判과 아울러 賢哲君主에 의한 王道政治의 확립을 위한 君王의 覺醒을 促求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一綱으로 提示된 「致中和」는 中宗으로 하여금 “中和”, 즉 王政의 大本으로 그들이 믿어마지 않는 君王의 存養省察하는 마음가짐에로의 勵進을 促求하는 것이었다. 李滉과 그 合疏者들은 당시 中宗의 治世에 대하여 극히 悲觀의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治効愈邇 關政益多 民怨於下而患沢愈鬱 天怒於上而災異疊見 歷觀前古之史 災異之多且大 未有甚於此時 而亦未有甚於近年

라고 서슴치 않고 표현할 정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原因이 근원적으로 中宗이 “中和之致”에 未極하고 있는 데서 찾고 있었다. 그들은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라고 풀이하면서,

大本之立 未能堅確 故達道之行 多所壅闕 由是 宮禁不得有所閑而嚴 紀綱不得有所類而立 人材之辨 或至於混 祭祀之謹 或至於黷 民隱欲恤而不恤 教化欲明而不明 名為慎刑而冤獄尚多 名為禁奢而弊習自若 名為納謙而直言不用

이라고 學論하고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中宗의 “中和之致”가 이루어지지만 하면, 뒤에서 論議하는 9個 項目의 時弊가 자연히 解消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中宗에게 요구하며 마지않은 “致中和”는 바로 君王의 儒家的인 修學·修德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夫以殿下之明而猶有今日之憂者 無他 聖學之功 有未盡 而中和之致 有未極也

라 하여, 修學·修德만이 오직 中和의 極功에 달할 수 있는 길임을 力說하고, 이어서 中宗이

知聖學之未至 加精一之真功 不責於人而責於己 不求諸外而求諸內 常從事於
戒慎 恐懼毋自欺 謹其獨之實

하면, “民怨”이며 “天怒”가 어찌 있을 수 있고, 災變이 어찌 근심이 되겠는가고 說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李滉과 그 合疏者들의 주장은 趙光祖(靜庵) 이래로 性理學派들이 追求하여 마지 않는 賢哲君主에 의한 理想的 國家社會의 建設·運營이라는 思想的 基盤—— 동시에 限界도 되겠다——에서 緣由된 것이겠다. 하지만, 당시의 現實의인 意味로 보면, 이러한 그들의 主張에는 그들 스스로의 勢力 挽回의 企圖가 곁들여져 있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致中和”에 대한 史臣의 다음과 같은 衍記에서도 엿볼 수 있다.

……哀又進言 以為聖學既已高明云云 自是以後 經筵進講 讀至二遍 輒卷以退 上無意於問難 而下亦沮縮於進言

즉, 앞서 己卯土禍 무렵에 南袞이 經筵에 실증을 느끼고 있던 中宗을 충동하여 經筵을 無為하게 만들므로써 中宗이 修學·治政에 등한히 하게 되고, 公論(進言)이 또한 沮縮하여 졌다는 內容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經筵의 充實, 즉 勳戚을 멀리하고 선비·학자를 가까이하면서 이들의 公論에 따른 政治만이 公道를 상실하지 않는 올바른 治政이 될 수가 있다는 主張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1綱에 뒤이어 「宮禁不可不嚴」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 까닭이겠다.

性理學派에 一大 試鍊을 안겨주었던 己卯土禍는 실로 그 起禍에 있어 宮中에서의 謀陷이 介在되어 있었다. 南袞·沈貞 등의 使嗾를 받은 洪景舟의 女熙嬪이 禁中에서 趙光祖와 그 一派를 讒問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沈貞 一派를 뒤엎은 또 하나의 戚臣인 金安老의 得勢에도 그의 子 穰가 駙馬로서 작용한바 컸었다. 李滉과 그 合疏者들이

自己卯以來 士林間禍敗之巨者 莫不由是而翻覆 故事閔宮閤 莫不寒心

이라고 宮禁의 不嚴과 土禍, 즉 自身들과의 關係를 指摘·痛嘆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실정에서였다. 하지만, 그들이 宮禁을 「王化之本」으로 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는

宮禁不肅 則邪徑通於內外 正路塞於朝廷 公論阻礙而不通 邪僻眩惑而售奸
亂亡於斯莫救矣

라고 하였듯이, 宮禁의 不嚴에서 말미암은 正路·公論의 閉塞,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國家的 危難 등을 予防·除去하려는 政治原論의인 理由가 아울러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宮禁의 不嚴은 따라서 紀綱의 不立·不行으로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紀綱不可不正」이 들쭉로 지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그들은

古之為政者 必先正其體要 紀綱是也

라고 紀綱의 意義를 규정하고, 이어서 그 담당 및 책임의 所在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紀綱不能以自立 必待賢者而後立 紀綱不能以自行 必待公道而後行, 夫賢者之所在 隱然有虎豹在山之勢 公道之所揭 赫然如日月中天之明, 狐狸褻魄而遁藏 陰翳望景而披積, 嗚呼 此宰相贊襄之責 而其機則在於人主之一心

즉, 紀綱이란 自立·自行되는 것이 아니라 賢者가 나타나고 公道가 이룩된 뒤에야 立行되는 것임으로 紀綱의 立行与否는 全的으로 君王과 公卿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宰相(公卿)이 贊襄(事理의 分別함이 없이 남을 따라 贊意를 표하는 것)만을 일삼고, 人主(君王)가 그 機(機)을 한마음으로 잡지 않아서, 오늘날의 紀綱이 「狐狸褻魄而遁藏」하고 「陰翳望景而披積」하듯 하니, 公卿과 君王이 함께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批判을 곁들인 說破인 것이다. 그들은 勳威政治下의 당시 社會를

私情勝而公道減 法令壞而百司慢 苞苴以解之 請托以紊之 貨賂以撓之 奸猾以亂之

하는 社會로 표현하면서 「由是一國之紀綱 幾於蕩悉」이라 痛嘆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理解와 批判은 바꾸어 말하면 國王을 輔弼하는 人材의 登用이 잘못되어 있다는 論理로도 통한다. 세계의 「人材不可不辨」은 紀綱의 紊亂이 자연 人材登用의 公正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보다는 위와 같은 內容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李滉과 그 合疏者들은 己卯士禍以後의 人事의 實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二十年来 朝廷士林 每分朋黨 隨權因勢 互相勝敗 勝者為君子 敗者為小人 附己者是之 異己者非之 既以為君子 則諸大夫同然是之 既以為小人 則諸大夫同然非之 是豈盡昏愚而莫辨者哉 率皆畏禍而附勢也 有所論執 則大臣率六曹言官合兩司 當此之時 殿下豈不以為物情如此哉 諸大夫之言 容有不可信者如此 故至於國人皆以為然後 其論公矣.

즉, 執權勢力이 言路(公論)를 閉塞하여 人事가 不合·不公으로 一貫하여 왔고, 또 不正하고 이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孟子가

國人皆曰賢 察之見賢然後 用之 國人皆曰不可 察之見不可然後 去之

하라고 한 말을 빌리면서, 오직 君王이 人事를 거듭 신중히 하는 것만이 人事의 不正·不公을 방지할 수 있는 眞理를 力說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獻議에는 中宗이 지난 날 人物의 賢·不賢을 살피지 못했다는 책망과 함께 그들의 서러웠던 원망이 서려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金安老의 失脚으

로 겨우 朝廷에 다시 말붙일 수 있게 된 그들 자신의 前途에 대한 염려와 함께 특별한 配應을 期望하고 있기도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계 향목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끝맺고 있는 데서도 살필 수가 있는 것이다

近者 賢邪稍今 朝廷稍安 但可因是而善持 豈容更鼓其異說 然人心之操捨不常 世道之翻覆無窮 於是 而尤加省念 絕偏黨之心 而守進退之公 則致中致和 夫人肯悅 而災不為災矣

다음, 「祭祀不可不謹」은 君王의 謹慎을 促求하는 방편으로써 論議되고도 있지만, 주로 「民隱不可不恤」에서 拳論하고 있는 天災異變의 連發과 관련지어지고 있다. 그들은 「民隱不可不恤」의 향목에서 現下 백성들이

近來水旱為災 饑饉荐臻 力本為民 終歲勤動 而不能救一朝溝壑之命 中人之家 十室九空 轉徙之民 何以聊生

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러하게된 原因의 하나로 제일 먼저 祀典의 소홀을 들고 있는 것이다. 「天人交孚 鬼神降福」의 기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敝陋한 齋廬를 淨潔하게 하고 君王이 親享하는 禮를 다하여야 한다는 그들의 議論에서였다. 儒家의 奉天敬神思想에 기반한 獻策이라 보겠다.

하지만, 李滉과 그 合疏者들이 「民隱不可不恤」에서 보다 強調한 것은 治者階層의 現實의인 對民取奪을 抑制하자는 데 있었다. 그들은 이같은 時弊로 다음의 두 가지를 論列하고 있다.

(1) 今之字牧之官 鮮有慈祥惻隱之憐 率多貪暴無卹之類……所事權貴 悅於貨賂 則思充其欲……巧作名色 各滋朘削粒米 狼戾於公廩 杼軸空竭於閭里 其他辺將之割剝 諸司之侵漁 若此之類 所在皆然 使殿下之赤子 一困於天災 再困於苛政.

(2) 步兵水軍之疲於土木 (王子女第宅營造 極其嵬傑 務勝於前 上京步兵畿內水軍 常供其役 困弊極矣) 選上皂隸之困於重斂 傾財破產 鬻盡田土 以應其役 及其還家 無以為業 則相率流亡 害及九族隣比 怨氣極天

즉, 그 한가지는 守令·辺將들의 貧虐이고, 다른 한가지는 上番軍士·皂隸들의 破產·流亡이었다. 在郷의 農民들은 權貴層에 賄賂하려는 守令·辺將들의 取奪로 困乏되어 있고, 上番軍士·皂隸들은 王室·勳戚들의 奢侈에 따른 重斂으로 破產·流亡하고 있으니, 京郷을 막론한 對民取奪의인 苛政이 全國民을 塗炭에 빠뜨리고 있다는 內容이겠다.

사실, 16세기의 朝鮮社會는 앞서도 言及한 바 있듯이 勳戚政治의 生理라고도 할 賄賂와 奢侈의 盛行으로 인하여 크게 뒤흔들리고 있었다. 守令·辺將은 물론, 京職의 諸官도 그 薦擧가 오로지 賄賂에서 결정되었던 데서 이들의 對民取奪과 公廩橫領은 이미 薦擧 當初

에 마련되고 默認된 바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李滉과 그 合疏者들이

夫親民之官 莫重於守令 其選不可不謹……而卿大夫不体聖心 循私害公 冒
薦庸鄙 首毀良法 夫薦之者之薦此人 非爲此人也 將以自利也 然則割剝軍民
者 非守令辺將之割剝也 乃朝廷之割剝也

라고 指摘하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勳戚政治에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実情에서였겠다. 그리고, 上番軍士와 畿內水軍의 營邸工事에의 使役과 上番皂隸에 대한 重斂은 軍丁·皂隸의 經濟的 몰락뿐 아니라, 이른바 “代役納布”와 “放軍取布”의 例를 擴大시켜 朝鮮朝前期의 軍制, 즉 五衛 및 鎭營의 体制을 虛沒化시켜 갔으니, 그 弊害는 끝내 軍制의 붕괴와 農村의 破産에까지 미쳤던 것이다.⁶⁾ 그리하여 軍制의 붕괴와 軍丁의 몰락은, 뒤에서 論述하는 바와 같이, 당시 倭·野人の 作亂에 消極的인 対処를 不可避하게 하였고, 또 뒷날 執權하게 되는 性理學派가 勳戚政治로 부터 물려받은 最惡의 難題로 등장되어지게 되었다. 이를 미처 解決하지 못한 속에서 맞이한 壬辰年의 倭侵(1592)과 丁卯·丙子年(1627·1636)의 胡侵은 臨機의인 제도들을 統出시켜, 이에서 빚어진 軍制의 亂脈相은 朝鮮朝 後期의 名実相符한 支配層을 이루었던 性理學派가 지니는 最大의 弱點이 되기도 한 것이다.

여섯째로 敵議하고 있는 「教化不可不明」은 勳戚政治下에서 不正하여진 土習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拳論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勳戚勢力의 學風이 傳統的으로 그들과 背馳되어 온 데 대한 批判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들은

治國之道 有二焉 刑政与教化而已 刑政所以制之於外也 教化所以感之於内也
……近年以來 教化不明 土習不正 節義廉恥 掃也盡矣

라 하여 “節義廉恥”가 없이 “奔競附會”를 일삼는 당시의 風土를 痛駁하면서, 그 原因을 敎學의 잘못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今者學校之政 不本於人倫 勸勵之方 只在於記誦詞章之末 記誦詞章 雖不可廢 化民成俗之本 實不在是

라고 論說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分明히 그들의 性理學을 보급하는 일만이 敎化를 이룰 수 있는 眞實을 淸明하는 동시에 勳戚勢力의 學風을 攻駁하고 그들의 執權이 失政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을 指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敎化之不明 由於導率之失其道耳

라 한 것도 이러한 뜻을 지닌 것이겠는바, 이 여섯째 項目은 그들의 底辺勢力의 擴大를

(6)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234~253面 參照

결들여 企圖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일곱째로 拳論한 「刑獄不可不慎」 역시 “制之於外”의 도로씨의 刑政을 議論한 것이라기 보다는 勳戚政治下에서의 濫刑 批判과 아울러 自身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濃度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刑獄의 原理論을 논술하면서 그 잘못된 事例로써 士林의 被禍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數十年來 士林之禍 反覆屢起 士大夫殞越於刑戮者 曾不知其幾人也 若其罪負閔重 情狀著白 王法所不可償則已矣 其間豈無非其罪而被重典 抱深冤於冥冥之中乎 (如己卯年趙光祖·金淨·奇遵 及儒生洪順福等 皆死於構陷袁·貞·沆之所為也 壬辰年生員李宗翼以上疏雜陳 乙未年進士陳宇以巷議被斬 金安老之所陷也)

즉, 己卯士禍를 비롯한 以後의 諸種 獄事가 모두 勳戚勢力의 모함에서 빚어진 冤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들을 “伸雪幽冤”하는 것이 또한 “弭災之一道”가 되리라고 結論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여덟째의 「奢侈不可不禁」은 앞서 拳論한 「民隱不可不恤」의 (2)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勳貴層의 奢侈와 이를 본따는 執權官僚들의 好奢를 批判하고 있다. 그들은

近來王子第宅 務極宏大 爭尚華侈 毀撤民家 橫亘閭閻 高棟層架 倖擬宮闕 以至婚姻之禮 車服什器之具 莫不極其華靡 士大夫之家 又從而慕效 室屋之大 婚禮之侈 傷財僭分 罔有紀極 弊將難救

라 하여 王室·戚族과 士大夫의 奢風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今之奢侈 固百弊之源 而其源在於宮禁

이라고 그 原因을 宮禁의 不敝에 두면서 그 弊害가

邦本之凋瘵 府庫之虛竭 皆由於此 亦足以起怒而致災

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說破하고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이러한 奢風이 止息되어야만 天怒의 災變을 免할 수가 있고, 또 百姓이 康寧하고 國庫가 充實할 수 있다는 論理인 것이니, 이에는 그들이 例로 들고 있는 孝寧大君의 경우, 즉,

往者 有宗室孝寧大君 性頗謙素 厭處華室 嘗構草室 恒處其中 終能壽延九表 子孫蕃衍 比近事之明驗也

라는 것과 같은 소박한 天福思想이 그 底辺을 이루고도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中宗에게 留心할 것으로 請한 「諫諍不可不納」은 앞서 拳論한 「致中和」나 「紀綱不可不正」 및 「人材不可不辨」과도 직접 관련되고, 또 증복되기도 하는 것으로써, 君王의 個人的 能力的 限界性과 公論의 政治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는 것이다. 李滉과 그 合疏者들은,

人主不能自聽 必合衆聽而為聽 不能自明 必合衆視而為明

이라고 諫靜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이어서 종래 勳戚政治下에서 萎縮되었던 公論相을 다음과 같이 들면서 그러한 前轍의 反復이 다시는 없도록 獻議하고 있다.

頃者 求言之後 上書者 (指己亥年韓山郡守李若水上疏) 偶觸忌諱 輒欲加罪 至命三省而推鞠 或有系賤而言事者 (指庚子年老人韓頌上疏) 以為欲亂朝廷者 教之 是以求言為穿於國中 各陳所懷 容有不当之論 人君伊當損其善而用之而已 豈宜加怒於妄言之人乎 諫者 非人君之利 乃國家之福也

그런데 그들의 위와 같은 自由롭고도 広範한 諫靜·進言의 保障要求는 단순히 君上의 自聽·自明이 不能하다는 原理論的인 이유에서 보다는,

頃者 國柄落於奸手 危亡在於朝夕 人莫敢進一言以觸之者 以此也

라고 하고 있듯이, 勳戚政治에 대한 自由로운 批判의 保障要求가 現實的으로 더욱 切實하였던 데서 力說되고 있는 바 없지 않은 것이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은 李滉을 포함한 一群의 性理學派의 時務疏는 확실히 儒家의인 理想政治論에 바탕한 것이었다. 따라서 儒家의 王道政治를 표면상 내세우고 있었던 당시 政界에서 理論的으로 이를 攻駁·批判할 余地는 거의 全無한 것이었겠다. 中宗이 이 時務疏에 대하여

今此上疏 再三觀之 一綱九目 皆合於道 當加省念 以答天譴^⑦

이라고 批答을 내린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 옳으리라 理解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致中和」를 비롯한 原理論·理想論에 너무나도 치우쳐 있었고 (己卯土禍 以來로 그들이 政界에서 指向한 바를 들어내주는 具體的인 一例가 되기도 하겠다), 또 이에서 자연 아직 朝廷을 掌握하고 있는 勳戚勢力에 대한 신랄한 批判과 아울러 그들 스스로의 進出·執權의 企圖가 결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의 實現이란 거의 無望하기도 한 것이었다. 이 時務疏가 上達된지 이를 뒤의 朝講時에 侍讀官 宋世奭이 時務疏에 대한 中宗의 구체적인 構想을 묻자, 中宗이

……將欲延訪大臣 以上疏之意講究 而有可行者 則當為舉行也^⑧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하였던 實情의 表現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性理學派의 士林勢力은 이 時務疏를 올린 얼마 뒤에 곧 政界로부터 다시 물러나고, 大尹·小尹의 勳戚政治가 再現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지적한 바 痼疾化된 諸弊害은 더욱 深化·擴大되어 갔다. 性理學派가 執權하게 되는 宣祖初에 이

(7) 中宗實錄 卷95 中宗36年4月戊午條.

(8) 同上 中宗36年4月庚申條.

르러 그들의 時局觀이 보다 深化된 危機意識을 들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였겠다.

宣祖元년에 大提學의 職任을 받고 다시 出仕한 李滉도 당시의 社會를 危機에 찬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가 同年에 宣祖에게 올린 時務의 六條疏와, 經筵에서의 啓劄은 이러한 그의 時局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六條의 時務疏⁹⁾는 「重繼統以全仁孝」「杜讒間以親兩宮」「敦聖學以立治本」「明道術以正人心」「推田腹心以通耳目」「誠修省以承天愛」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1綱9目과 大同小異한 것인 바, 宣祖가 入養·承統한 데서 우선된 “繼統”의 1目を 除外하고는 杜讒(宮禁), 聖學, 明道(立綱·教化), 推腹(納諫·辨人), 修省(謹祭·禁奢)의 5目이 모두 그論旨의 展開에서 勳戚政治에 관한 批判·攻駁만을 거의 除外하고 있을 뿐, 中宗朝의 時務十條疏의 內容을 그대로 包容하고 있는 것이다. 李滉을 포함하는 性理學派가 執權하였던 당시에 그의 時務疏가 中宗朝의 時務疏와 그 內容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같은 사실을 그와 그들이 指向한 바가 尙今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려 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時局觀이 보다 심각한 危機意識에 바탕하고 있었다는 점을 示唆하고도 있는 것이겠다. 이것은 그가 이 時務疏를 끝맺으면서, 宣祖에게

勿以為卑近而不足為 勿以為迂闊而不必為 必先以首二條為本 尤勳勵不息於聖學之功 毋欲速 毋自畫

라는 根本의 이고도 漸進의 政治姿勢를 당부하고 있는 데서, 또 이에 뒤이어 올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經筵啓劄(戊辰--)에서 익히 살필 수 있는 것이다.

李滉의 經筵啓劄¹⁰⁾은 軍士蘇復論을 開陳한 것으로, 籓兵을 위한 搜戶括丁의 施行을 延期하자는 데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는 이 啓劄의 序頭에서

國之大事 因在兵戎 今者 軍卒消耗 名存實無 內外皆然 搜兵補闕 在所當急 不可以民之怨恚而停罷

라고 하여 搜丁籓兵이 今日의 急務임을 익히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한편, 그는 오늘날의 社會가 「顛仆者未起 呻吟者未絕」하고 있는 極惡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도看過하지를 않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民之怨恚」로 인하여 搜丁籓兵의 莫重·莫急한 일을 停罷할 수는 없다고 前提하고는 있지만,

百穀不登 民何以充腹 木花掃無 民何以蔽體 飢寒切身 民無所顧籍 皆思破家流散

하는 마당에서는 그 實効를 기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國家亂亡之禍」를 초래

(9) 註2 參照.

(10) 同上

할 우려가 있음으로

以為不如及今始停兵籍 以待年登民息而為之

하는 것이 「於義為得 於事為便」하다고 獻策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李滉의 論議는 확실히 당시의 朝鮮社會가 매우 危難한 처지에 처하여 있다고 인식하였던 데서 發現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더욱이, 뒤에서 論及하는 바와 같이, 당시 女真 및 倭人の 動態에 대해서도 깊은 憂慮를 표하고 있었던 그였던 것이다. 그가 女真 및 倭人과의 國交에서 가능한 限, 友好的인 通交를 維持하기 위한 讓步를 獻議하고 主張하여마지 않은 것도 內情에 대한 危機意識이

漢·魏之張角·葛榮 唐·宋之黃巢·方臘 皆何因而起乎 當時亦必有以如臣之言見笑於世者 使時君早憂而豫為之所 則豈終於覆敗乎

라고 이 啓割에서 举例할 정도로 깊이 認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 對外政策論

李滉이 生存했던 時期에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對外關係에서 두드러진 事件이 없었다. 壬辰年(1592)의 倭侵이 있기까지 16세기 一期를 통털어 보아도, 些少한 辺警에 지나지 않는 事件들이 간헐적으로 돌발하여 왔던 것이다. 倭人の 作亂 경우, 中宗5年(1510)의 三浦倭亂과 明宗10年(1555)의 乙卯倭變이 비교적 요란한 편이었고, 野人(女真)의 경우는 成宗22年(1491)의 우더거(元狄哈)의 造山里 侵寇에 대한 許琮의 勇猛적인 征伐이 있는 以來로는 李滉 死後에 尼湯介의 侵寇가 있기까지 아주 소규모의 作亂이 3·4次 있었던 데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滉은 女真·倭와의 關係에서 커다란 憂慮를 자주 표하고 있다. 例하면, 明宗9年(1554)에 黃俊良에게 보낸 答書에서

但今南北巨患 不朝即夕 而環顧在我 無一可恃 則山林之勢 亦豈必也耶⁽¹⁾

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乙卯倭變 當時(1555)에 趙士敬에게 보낸 答書에서

方今巨寇侵軼 國無備禦之策 意不知稅駕之所 痛歎奈何⁽²⁾

라고 한 것을 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가 위와 같은 些少한 外人의 作亂을 한결 같이 「巨患」·「巨寇」로 표현하면서 憂慮를 나타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上記한 글로써 보면, 당시의 備禦策과 狀態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빈약하였다는 데 그 까닭이 있었으리라 이해된다.

(1) 退溪先生文集 卷之十九 書, 答黃仲舉條.

(2) 同上 卷之二十三 書, 答趙士敬條.

사실, 16세기 朝鮮朝의 防禦態勢는 上述한 바와 같은 勳戚政治의 腐敗로 인하여 극도로 虛弱하고 있었다. 全國의으로 富實하였다는 慶尙道에서의 軍士가 總 10萬을 해야하였는데, 실제로는 겨우 2萬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정도로¹³⁾ 軍士의 流亡·避役이 극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本來의 防禦體制인 五衛·鎭管編制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殘存軍士를 戰亂地로 모두 集結·처치케하는 이른바 “制勝方略”의 便法이 臨機応變으로 쓰여지고 있었다.¹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便法的인 措置였을 뿐, 正當의이고도 本格的인 體制는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壬辰年의 大規模 倭侵을 당하여 이제껏 소규모의 戰爭에서 그런대로 効力を 나타냈던 “制勝方略”이 無力·無効하였던 것도 이 까닭이었겠다. 李滉이 나타냈던 憂慮도 바로 이러한 內政上의 弱點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옳겠다.

이러한 意識에 바탕했던 李滉의 對外政策論은 中宗 39年(1544)에 올린 그의 「乞勿絶倭使疏」¹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上疏는 그 해에 倭人의 蛇梁鎭 入寇가 자국이 되어 朝廷이 三浦一帶 倭館의 倭人들을 축출하고 倭와의 通交를 断絶하는 보복적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三浦의 倭人들과 倭使가 通交의 復旧와 倭館에의 居住를 復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온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는 이 上疏에서 당시 朝廷의 強硬論과는 달리 消極的인 穩健論을 주장하고 있다. 즉,

以禽獸畜禽獸 則物得其性 以夷狄待夷狄 則夷安其分 故王者不治夷狄 春秋錄戎 來者不拒 去者不追 治之以不治者 乃所以深治之也

라고 夷狄를 대하는 原則論을 내세우면서,

今以蛇梁竊殺之事 較之於彼(彼는 漢 高祖時의 呂奴의 侵寇를 뜻함)雖曰 同歸於罪 而輕重則有間矣 若之何不許其自新之路 而構禍於吾之赤子乎 ……故自古帝王御戎之道 以和為先 其不得已而至於用兵者 為其除禽獸逼人害 害去則止 何必甚之而生怨 以致搏噬之患哉

라 하여, 스스로 용서를 빌며 倭館에의 居住와 通交를 청하여 오는 倭人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朝鮮에 있어서 장악하고 있는 夷狄와의 和親之道の 主導權을 올바르게 행세하는 길임을 다음과 같이 說破하고 있다.

13) 中宗實錄 卷15 中宗7年2月戊戌條에 「慶州府尹李繼福曰……慶尙一道軍士十余萬 而親往觀之 則纔二万余人……」이라고 보인다.

14) 前掲 「韓國軍制史」 296~302面 參照.

15) 註 2 參照.

抑又有一說焉 与夷狄和親之道 因当有操縱伸縮可否之權之勢 而此權此勢 必常令在我 而不可令在彼也 臣亦知朝廷之意 以此為重 而為是堅拒之議矣 然有罪則絕之 自新則許之 此正權勢之在我 而施当其可也 当其可之 謂時何可違也 有其權 忘其勢 而無心以処之 則彼必以為大德 而感悅於其心 相率而投款矣 是所謂化之也

그러나, 李滉의 이러한 주장·건의에는 또 다른 理由가 위와 같은 原則論에 못지않게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것은 곧 당시의 內實의 不備와 女眞의 勢力成長을 自覺한 点이었으니, 그는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당시의 內政이 자칫 잘못하면 “亂亡之禍”를 입을 정도로 不實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하였던 使臣 女眞과의 構疊에도 크게 不安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上疏에서

國家已与北虜構疊 安知彼中不有諸酋之榮驚 切齒報復而謀犯辺守者乎 設使南北二虜一時俱發 則榜東而西掀 衝腹而背潰 未識國家將何所持而能辦此乎 此臣之所大憂也

라고 하면서, 「東南財賦之所出 兵力之所在 尤不可不保」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倭와의 충돌——특히 이로 인한 慶尙道 일대에서의 混亂——을 可及의 피하기를 바라는 「乞勿絶倭使疏」의 現實論의 바탕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李滉은 구체적으로 中宗에게

國有大赦於汝 亦不可無鴻恩之及 故特許再請云云

하면서 倭의 請을 수락하여 줄 것을 獻策하고 있다. 이리하는 걸만이 國家의 體統을 세우고, 아울러 倭로부터의 辺憂를 덜며, 女眞의 侵寇에도 창졸간에 覆敗하는 患을 免할수 있는 現下의 最善의 方便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方便의 措置를 취하는 한편, 「益脩人事於根本之地」하여 內實을 갖추는 것이 現時點에서의 急先務로 믿어마지 않았던 것이다

以上 살핀 바와 같이, 李滉의 對外政策論은 곧 內政과 密着된 것으로, 그의 軍士蘇復의 주장과도 相通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서 言及한 바 있듯이, 그는 결코 現實을 外面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록 斷片的인 論議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弊政의 根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또 그 代案도 매우 慎重을 기하고 있었다고 보겠다.

結 語

이제까지 우리는 李滉이 남긴 몇가지 斷片的인 記錄을 통하여 그의 時局觀——時代意識——과 그가 志向한 바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結果, 우리는 다음과 같은 點들을 認知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첫째, 李滉은 16세기 一期를 거의 一貫하여 온 勳戚政治가 朝鮮社會의 피해와 損傷을 가져온 根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國家의 體統을 지킬 수 있는 範圍內에서의 穩健의인 對外關係를 유지하면서, 勳戚政治의 終息을 통해 內實에의 勵進이 當面한 최대의 急先務로 믿어마지 않았었다.

둘째, 李滉의 內實을 기하지 위한 內政改革의 志向은 儒家的 王道政治의 具現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急進的·制度的인 改革手段으로서 보다는 漸進的·精神的인 改革의 手段, 즉 君王의 賢哲君主化와 臣民의 道學的 教化를 토대로 한 自發的·自生的인 實現에서 追求되고 있었고, 또 國民의 処遇改善——生活向上——이 항상 前提로 되고 있었다.

셋째, 李滉을 포함한 一群의 性理學派들이 勳戚勢力에 의하여 政權에서 排除되었던 當時, 現實改革의 具體的 提案에 보다는 道學的 理論的 體係化에 더욱 깊이 하였다는 것은 그 自体가 勳戚勢力에 대한 批判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 自身이 執權할 경우의 經綸과 勢를 研磨·整頓한 實質的인 現實參與 作業이었다고 理解될 수 있었다. 그들의 時政論이 王道政治의 理論的 展開에 결들여 勳戚勢力의 批判을 통한 스스로의 政界進出이 企圖되고 있는 바가 이를 뜻하는 一端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理解에 덧붙여서 이 紙面을 빌어 한가지 言及하고자 한다. 그것은, 宣祖의 即位로 勳戚政治가 終息되고 性理學派의 執權이 확고하여지면서 性理學派가 退溪學派와 栗谷學派로 分裂·成黨하게 되는데, 그 理由가 단순한 理氣說에 대한 見解의 差異 뿐만이 아니라, 새로히 治者의 位置에 오른 그들 사이의 政策의 差異에서도 緣由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點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理學·道學에 크게 傾注한 李滉과 그 一派가 對 勳戚鬭爭에서 다져온 治者의 良心을 강조하던 立場을 그대로 堅持하고자 한데 대하여, 氣論·經綸을 보다 중요시한 李珣과 그 一派가 李滉類의 保守的 立場을 벗어나 經世의 術을 現實的으로 적극 모색하고자 한데서 빚어지지 않았나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分派·分黨은 그것이 政策上의 對立이었던 데서, 또 一黨의 專制를 制約할 수 있는 牽制 勢力의 形成이었던 데서 肯定的으로 評價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